

1. 개정이유

정액등처리업 및 종축업에 대한 우수업체 인증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과 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「축산법」이 개정(법률 제18536호, 2021. 11. 30. 공포, 2022. 6. 1.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개정된 법의 근거조항을 시행규칙 상에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(「축산법」 제2조제5항)됨에 따라 인증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인증을 취소할 경우 우수업체인증서를 회수하고, 인증이 취소된 우수업체는 인증서를 지체없이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함(안 제26조제6항 및 제7항)
- 나. 인증의 기준 등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축산법 제21조제4항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, 「축산법」 개정으로 제21조제5항으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근거조항 일치(안 제26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없음

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3항 중 “법 제21조제4항”은 “법 제21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경우 우수업체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.

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업체인증서를 지체없이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 의 인증기관 지정 등) ① ~ ② (생략) ③ <u>법 제21조제4항에</u> 따른 우 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. ④ ~ ⑤ (생략) ⑥ (신설) ⑦ (신설)	제26조(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 의 인증기관 지정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법 제21조제5항에</u> ----- ----- -----. ④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취 소할 경우 우수업체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.</u> ⑦ <u>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 증이 취소된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업체인증서를 지체없이 국립축산과학원의 장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</u>